

복 지 규 정

제 정	1999. 1.19.	1차 개정	1999.12.29.
2차 개정	2000. 8. 8.	3차 개정	2000. 9.21.
4차 개정	2001. 1.15.	5차 개정	2001.12.29.
6차 개정	2002. 2.14.	7차 개정	2002.12.14.
8차 개정	2003. 2.13.	9차 개정	2003. 5.29.
10차 개정	2003.11.27.	11차 개정	2004. 5.27.
12차 개정	2004.12.22.	13차 개정	2005. 4. 8.
14차 개정	2006. 2.17.	15차 개정	2007. 3. 2.
16차 개정	2008. 3.10.	17차 개정	2008. 6.16.
18차 개정	2008. 12.4.	19차 개정	2009. 2.10.
20차 개정	2010. 2.23.	21차 개정	2011. 3.31.
22차 개정	2013. 1.31.	23차 개정	2015. 6. 9.
24차 개정	2016. 3.11.	25차 개정	2016.11.29.
26차 개정	2017. 5.19.	27차 개정	2018. 5.18.
28차 개정	2019. 7.15.	29차 개정	2020. 6.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집행간부, 감사, 전문심의위원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건강증진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6>

제2조(환경검사 및 위험방지) ① 총무국장은 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 유지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환경검사를 실시하며 위험 또는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1회 이상 실시하며,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무국장이 정한다.

제3조(안전 및 위생교육) 직원을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제4조(건강진단) ① 직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 부담으로 재검사 또는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③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특수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의무실 설치운영) 직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부속의무실 및 약국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부속의무실 및 약국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과 의무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직장체육 등) ① 직원의 체력 및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며 공식적인 대내외 체육행사 또는 교육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를 감독원 경비로 부담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체력 및 교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총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 및 교양활동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에서 장소, 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휴양시설 설치운영)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휴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후생시설 등) ①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구내식당, 이발소,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등의 각종 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후생시설 및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장소 및 기본적인 시설의 대여는 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보조비를 감독원 경비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의 복지를 위한 후생시설을 대여할 경우 대여장소 및 대여품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무국장이 정한다.

④ 운영보조비라 함은 직접적인 금전의 지급은 물론 대여시설을 피대여자가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8조의2(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① 직원의 영유아 자녀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직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4.8>

②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총무국장이 정한다.
<신설 2005.4.8>

제9조(직원 숙소 설치운영) ①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 등의 숙식편의를 위하여 직원 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원숙소시설이 미비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대여주택을 임차 또는 구입(이하 "대여 직원숙소"라 한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직원숙소의 임차 필요성 여부의 판단기준 및 임차지원한도는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총무국장이 정한다.

③ 직원숙소(대여 직원숙소 포함)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감독원 이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독신직원의 경우의 식비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삭제 <2001.12.29>

제11조 삭제 <2001.12.29>

제12조 삭제 <2001.12.29>

제13조(단신부임 직원에 대한 여비 보조비) ① 본·지원(파견기관 포함)에 단신부임한 기혼직원 및 지원(파견기관 포함)에 부임한 미혼직원에 대하여 월 왕복 2회에 해당되는 여비 범위 내에서 그 근무지와 부양가족 거주지간의 교통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10., 2016.3.11.>

② 단신부임 직원에 대한 여비보조비의 지급방법, 지급일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삭제 <2001.12.29>

제15조(의료비보조금 지급) ① 직원이 지급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 <개정 2002.12.14>

2. 직원 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 다만, 직원 가족은 배우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중 직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08.3.10>
3. 직원 자녀중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장애치료비 <신설 2008.3.10>
 - ② 제1항의 의료비 보조대상, 범위, 지급제한, 지급액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경조비 지급 등) ① 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고 장의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4.8>

- ② 제1항의 경조비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로 하되 지급의 범위 및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의 장의지원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이 정한다. <신설 2005.4.8>

제17조(학자보조금 및 장학금지급) ① 직원(1999년 1월 2일 이후 순직한 직원을 포함한다)의 중학교, 고등학교(미인가 대안학교 포함) 및 대학교에 취학중인 자녀(대학교의 경우 순직직원의 자녀에 한함)의 학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11.27, 2008.3.10, 2009.2.10>

- ② 직원의 대학생자녀 등록금등은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장학회 등을 통해 별도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1.3.31>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보조금 등은 국내외를 통산하여 동등학력에 수학하는 경우 학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지 않은 수학기간에 대하여만 지원한다. <개정 2006.2.17, 2009.2.10>
- ④ 근로기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사택대여) ① 근무지에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소유주택이 없고

가족과 동거 및 부양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감독원이 임차한 주택(이하 “임차사택”이라 한다)을 직원에게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3.2.13>

② 감독원은 직원에게 임차사택을 대여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원(파견기관 포함) 근무 직원이 그 근무지에서 사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3.1.31>

③ 사택대여, 임차승인신청, 사용료 부과 및 징수기준 등 사택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31>

제19조(사택대여 대상자)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택대여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실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본원 소재지 이외 근무자는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과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무국장이 사택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2.13., 2009.2.10., 2016.3.11.>

1. 근무지에 본인 및 동거가족 명의의 소유주택이 없고 가족과 동거 및 부양하는 기혼직원 또는 2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직원
2. 생활능력이 없는 부, 모 또는 제매를 부양하고 근무지에 본인 및 동거가족 명의의 소유주택이 없는 장자인 미혼직원. 다만, 장자가 사망하였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 차순위 제매인 직원(이하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사택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3.2.13>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을 대여받고 있는 직원. 다만, 건축중인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직원과 인사이동발령을 받은 직원으로서 총무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합직원 중 2급 이상인 직원(다만, 본원 소재지 이외 근무자는 제외)과 전문직원 <개정 2005.4.8., 2011.3.31., 2016.3.11., 2019.7.15.>
3. 배우자가 소속직장에서 주택관련 자금을 수혜받고 있는 직원
4. 본인,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합계액이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직원(다만, 인사발령으로 본원 소재지 이외 근무자는 제외) <개정 2016.3.11.>
5. 삭제 <2005.4.8>
6. 제19조 내지 제22조 및 자산관리규정 제6조의6의 규정을 위반한 직원 <개정

2008.12.4>

제20조(다른 지역에서의 사택대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택대여 대상자가 그 근무지에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총무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근무지 이외의 다른 지역 사택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3.2.13>

제21조(사택대여기간) ①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택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택대여기간은 통산 9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2.2.13, 2013.1.31>

② 제1항의 사택대여기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2.13>

제22조(사택규모 및 임차기준한도) ① 직원(해외직원 제외)에 대한 사택의 규모는 건물 전용면적 85㎡ 이내로 한다. 다만 총무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2.13>

② 사택의 임차기준한도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부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별표1>의 임차기준한도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하여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3.2.13>

제23조 삭제 <2003.2.13>

제24조 삭제 <2003.2.13>

제25조 삭제 <2010.2.23>

제26조(복지기금의 운영) ① 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원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1.3.31>

제27조(피복등 대여) ① 직원에 대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지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2009.2.10>

③ 피복사용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다만, 비치품 및 제2항에 의한 경우 분실, 훼손 또는 오염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지급하거나 재대여할 수 있다.

제28조(재해부조) ① 직원이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소실, 유실, 파괴 또는 침수된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직원이 사망하여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기준봉급의 12개월분(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경우 기본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개정 2008.6.16>

제29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개정 2018.5.18>

1. 삭제 <2018.5.18>

2. 삭제 <2018.5.18>

3. 삭제 <2018.5.18>

② 삭제 <2008.6.16>

제29조의2 삭제 <2018.5.18>

제30조(문화교양활동 등의 지원) ① 직원의 문화교양활동 증진을 위하여 활동비 및 체육·문화활동, 건강·의료, 교육·개발 등을 위한 선택적복지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② 문화교양활동비 및 선택적복지비의 지원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보험가입 등) ① 해외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과 그 가족 및 현지 채용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

② 해외직원 및 그 가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현지 채용직원에 대하여는 의료보험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한한다.

1. 해외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현지 의료보험
 2. 현지법령 등에 의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제보험
 3. 현지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국내 재해보상보험
- ③ 제2항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요 보험료를 감독원 경비로 부담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보험료의 지급한도는 현지 법령, 실정 등을 감안하여 총무국장이 정한다.

제32조(요양비 보조) ① 해외직원 및 그 가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가료를 요할 때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요양비 지원한도는 <별표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경우
2. 부상 및 질병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체이상을 치료하는 경우
3. 요양비 총액이 미화 100불 또는 그 상당액 미만인 경우

제33조(자녀학비 보조) ① 해외직원의 학자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무지에 동반한 자녀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녀학비 보조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 국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 <개정 2016.3.11.>
2. 지원범위 : 해당 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미국은 제외)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고등학교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700달러(고등학교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무국담당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3.2., 2016.3.11., 2016.11.29., 2020.6.8.>

③ 제2항의 학비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총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대여주택의 원상회복비) ① 해외직원이 대여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직원간

승계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비는 임차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직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외하고 2개월 분 임대료 해당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해외직원이 임차기준한도 이내로 최초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입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가 인상되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해외직원 대여주택의 임차보증금 등) 해외직원이 대여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는 3개월분의 주택임차료 해당액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또는 보증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관계법령의 준용) 직원의 안전과 보건관리, 직장체육, 문화예술진흥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중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6>

제36조(제재) 직원이 허위로 이 규정에 의한 자금이나 사택 등을 대여 또는 지급받는 경우, 사후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요건을 위반하고 이의 반환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혜대상에서의 제외, 벌칙 금리의 적용, 부대경비의 본인부담 등의 조치와 인사관리 규정에 의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2.13, 2008.6.16, 2008.12.4>

부 칙(99.12.29)

이 세칙은 2000.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8.8)

이 세칙은 2000. 7.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9.2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0. 9.21.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일 현재 지원 임차기준 한도를 초과한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하여는 동 계약 만료일까지 동 금액을 임차기준한도로 본다.

부 칙(2001.1.15)

이 세칙은 2001.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는 2000.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9)

이 세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14)

이 세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14)

이 세칙은 2002.12.14.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13)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3.2.13.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대여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주택대여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3. 5.29)

이 세칙은 2003. 5.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7)

이 세칙은 2003. 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27)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4. 5. 17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직원의 주택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현재 주택임차료 한도를 초과한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근무 만료일까지 동 계약금액을 임차료한도로 본다.

부 칙(2004. 12.22)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4. 12. 22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직원의 주택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현재 주택임차료 한도를 초과한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근무 만료일까지 동 계약금액을 임차료한도로 본다.

부 칙(2005. 4. 8)

이 세칙은 2005. 4. 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17)

이 세칙은 2006. 2.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 3. 2.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직원의 자녀학비 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영어권 국가의 해외사무소 동반자녀 월평균 학비 보조금 지원한도는 당해학교 졸업시까지 종전 한도를 적용한다.

부 칙(2008. 3. 10)

이 세칙은 2008. 3. 10.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취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9조 및 제30조 중 “복지세칙”을 각각 “복지규정”으로 한다.

② 「조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직무권한분류표 6. 39. 중 “복지세칙”을 “복지규정”으로 한다.

③ 「연수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복지세칙”을 “복지규정”으로 한다.

④ 「회계세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호 중 “복지세칙”을 “복지규정”으로 한다.

⑤ 「자산관리세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복지세칙”을 “복지규정”으로 한다.

부 칙(2008. 12. 4)

이 규정은 2008. 1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0)

이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사택대여기간) 개정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택을 대여 받은 직원의 임차사택 대여기간은 총 대여기간에 산입한다.

③별표 2,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16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2015.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18)

이 규정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5)

이 규정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8)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3.2.13, 2003.5.29, 2005.4.8, 2007.3.2, 2013.1.31, 2016.3.11., 2017.5.19., 2019.7.15.>

국내직원 임차사택기준 한도

(단위 : 만원)

본원·수도권 (종합직원 3급 이하)	지 원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기 타
18,000	15,000	15,000	15,000	15,000	10,000

주 : 전세가격 수준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가감 운영 가능<신설 2013.1.31>
 제주·창원지역은 광역시 수준 적용<신설 2016.3.11>

<별표 2> <개정 2004.5.27, 2004.12.22, 2013.1.31, 2015.6.9., 2016.11.29., 2019.7.15.>

해외직원 주택임차료 월간한도

(단위 : 주재국 통화)

직급별 지역별		소장· 종합직원 1급	종합직원 2급	종합직원 3급이하
미	국	4,940	3,800	3,500
영	국	3,900	3,000	2,500
독	일	2,400	2,400	2,100
프	랑 스	2,800	2,800	2,400
일	본	561,000	418,000	363,000
중	홍	50,000	47,000	45,000
	경	32,500	31,000	27,000
베	트 남	3,600	3,600	3,100

주 : 1) 베트남은 미국 통화로 지급 <신설 2013.1.31>

2)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월간 지원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신설 2016.11.29.>

<별표 3> <개정 2008.6.16>

피복지급 및 비치기준

품 명	지급시기	사용기간	대 상 자
위 생 복(동)	9 월	1 년	의무실
위 생 복(하)	5 월	1 년	의무실
방 한 복	9 월	2 년	문서송달 및 제본업무 종사자
작 업 복(동)	9 월	2 년	작업업무종사자
작 업 복(하)	5 월	1 년	작업업무 종사자

<별표 4>

재해부조금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직 원 소 유	직 원 거 주
주택이 완전소실, 유실된 경우 ¹⁾	기준봉급 ²⁾ 의 800%	기준봉급의 600%
주택이 2분의 1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봉급의 600%	기준봉급의 400%
주택이 3분의 1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봉급의 400%	기준봉급의 200%
주택이 5분의 1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봉급의 200%	기준봉급의 100%
주택(가재도구 포함)이 2분의 1이상 침수된 경우	기준봉급의 300%	기준봉급의 200%
주택(가재도구 포함)이 5분의 1이상 침수된 경우	기준봉급의 200%	기준봉급의 100%

주 : 1) 주택건물 내부가 완전 소실된 경우 포함

2)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지급기준에서의 기준봉급으로 본다.

<별표 5>

해외직원 요양비 지급한도

구 분	직 원	가 족
입 원 진 료 시	실비의 90%	실비의 80%
외 래 진 료 시	" 80%	" 70%

<별표 6> (삭제 2016.11.29.)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08.6.16, 복지절차로 이관)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08.6.16, 복지절차로 이관)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08.6.16, 복지절차로 이관)